석탄발전소 폐지 피해 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(황명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232

발의연월일: 2024. 9. 24.

발 의 자:황명선·정진욱·박수현

윤건영 • 박홍배 • 이재관

박해철 · 강준현 · 이광희

송재봉 • 허성무 • 오세희

이병진 · 장종태 · 양부남

임미애 의원(16인)

제안이유
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과 석탄발전소 폐지 정책은 해당 지역사회와 관련 산업 구조, 근로 환경에 급격한 변화를 야기시킬 것 으로 예상됨.

정부는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공정한 전환을 도모하여야 하나, 석 탄발전소 폐지 등 에너지 전환 정책 수립·이행으로 인한 지역사회 피해 지원 및 해당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대책은 미비 한 실정임.

이에 해당 지역과 근로자 등 이해당사자가 계획 수립·이행 단계에서 직접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수혜자가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기반이 요구됨.

또한 사안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단발적인 지원이 아닌 전폭적인 재

정 지원을 통하여 실효적인 정책이 시행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법률을 제정하여 석탄발전 산업의 전환 과정에의 피해 지역과 근로자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, 지속가능한 환 경 및 사회 구축에 이바지 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가. 이 법의 목적을 기후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석탄발전 폐지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, 지속가능한 환경 및 사회 구축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명시함(안 제1조).
- 나. 피해지역 및 근로자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를 위한 피해지원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두고,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함(안 제5조 및 제6조)
- 다. 피해지역에 대한 효율적·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 및 시 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 (안 제7조 및 제8조).
- 라. 석탄발전소 폐지로 인한 피해 예방 또는 복구 지원을 위하여 석탄 폐지 피해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정 대상을 규정함(안 제9조).
- 마. 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피해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0조).
- 바. 국·공유재산의 대부, 국고보조금 보조율 및 계약방법의 특례 사

항을 규정함(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).

사. 피해지역 지원을 위해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지역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 또는 참여시킬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14조).

법률 제 호

석탄발전소 폐지 피해 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제1조(목적) 이 법은 기후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석탄발전 폐지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, 지속가능한 환경 및 사회 구축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석탄발전소"란 「전기사업법」 제2조제4호 따른 발전사업자가 운영하는 시설로서 석탄을 연료로 하는 발전시설을 말한다.
- 2. "석탄발전소 폐지"란 1호의 시설이 「전기사업법」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가동이 중단되는 상태를 말한다.
- 3. "피해지역"이란 석탄발전소 폐지와 관련하여 직·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거나 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.
- 4. "석탄발전소 근로자"란 석탄발전소를 직접 운영하는 사업주, 협력 사 및 자회사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말한 다,
- 제3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이 법은 석탄발전소 폐지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정된 지역 및 석탄발전소 근로자에 대한 지원에 관

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

- 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는 피해지역의 경제 진흥 및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·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.
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의 협력을 통하여 피해지역 및 근로자 지원에 관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
- 제5조(피해지원위원회의 설치) ① 피해지역 및 근로자 지원에 관한 중 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석탄발전소 폐지 피 해지원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하고,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, 위촉위원은 에너지 전환 등 관련 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 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.
 - 1. 기획재정부장관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, 행정안전부장관, 산업 통상자원부장관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
 - 2.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 도지사
 - 3.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 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되, 이하 "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"이라

한다)

- 4. 「전기사업법」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(이하 "사업자"라 한다)의 대표
- 5. 피해 당사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근로자단체, 소비자·환자 관련 시민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 간단체를 말한다)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
-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-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된다.
- ⑥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.
- ⑦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.

제6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1. 제7조에 따른 피해지역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
- 2. 제8조에 따른 피해지역 지원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
- 3. 제9조에 따른 피해지역 선정에 관한 사항
- 4. 제11조에 따른 국유재산 · 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관한 사항
- 5.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피해지역과 근로자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- 제7조(피해지역지원계획의 수립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계획(이하 "지원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당 지원계획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
 - ② 지원계획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.
 - ③ 지원계획의 수립절차·요건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8조(피해지역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)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원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관별로 피해지역 지원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③ 시행계획의 수립절차·요건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9조(피해지역의 선정 등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탄발전소 폐지 로 인한 피해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하여 석탄발전소 폐지가 완료 또 는 예정된 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 쳐 석탄폐지 피해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받아 지정하여야 하며, 관계 중앙행정기관

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.

- 1. 인구의 현저한 감소 또는 주거환경의 악화가 현저한 지역
- 2. 석탄발전소 폐지 전 후 산업구조의 변화가 발생한 지역
- 3. 해당 지역 내 사업체의 생산, 매출 및 고용현황 등 경영여건이 악화되었거나 예상되는 지역
- 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
-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피해지역의 선정계획, 조사결과, 선정과정 등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여야 한다.
-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피해지역의 선정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 또는 토론회를 실시하여야 한다.
- 제10조(피해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) ①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에 드는 사업비를 확보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기위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에 피해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(이하 "특별회계"라 한다)를 설치한다.
 - ② 특별회계는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·운용한다.
 - ③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「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3항에 따라 배출권을 유상으로 할당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입금 중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에 따른 금액
 - 2. 정부 출연금

- 3.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
- 4.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제69조에 따른 기후대응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
- 5. 차입금
- 6. 그 밖에 특별회계 관리 · 운용 등에 따른 수입금
- ④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대체 산업 육성, 지역개발, 관광진흥, 문화시설 확충 등 피해지역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
- 2.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, 생활 안정, 생활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 등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
- 3. 석탄발전소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, 재취업 지원 등 고용안정 및 촉진에 필요한 비용
- 4. 그 밖에 피해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
- ⑤ 특별회계의 관리・운용 및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지방자 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제11조(국·공유재산의 대부 등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지역 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유재 산·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할인하여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고,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.

- ② 국유재산·공유재산을 대부받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국유재산·공유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.
- ③ 대부·사용허가 및 매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2조(피해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보조율) 국가는 피해지역의 개발을 위한 지원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지원할 수 있다.
- 제13조(계약방법의 특례)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시장·군수 또는 구청 장은 피해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또는 지방교 부세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 중에서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에 대하여는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에도 불구하고 그 공사의 입찰 참가자격을 피해지역에 주된 영업소 가 있는 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로 제한할 수 있다.
- 제14조(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및 참여) 피해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피해지역 지원을 위해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지역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거나 참여시킬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